

향 후 대 응

- **입국자가 증가**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례적인 체류를 허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는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**귀국을 위한 조치**를 취합니다.

① 체류기간이 6월 29일까지인 분

다음과 같이 체류기간의 갱신을 허가합니다.

a) 「특정활동(6개월)」 등으로 체류하시는 분 : 「**특정활동(4개월)**」

b) 「단기체류(90일)」 등으로 체류하시는 분 : 「**단기체류(90일)**」

주의1) 현재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.

주의2) 다음 갱신시에는 「특정활동(4개월)」 또는 「단기체류(90일)」 을 「**이번에 한해**」 허가합니다.

② 체류기간이 6월 30일 이후인 분

「**이번에 한해**」 다음과 같이 체류기간의 갱신을 허가합니다.

a) 「특정활동(6개월)」 등으로 체류하시는 분 : 「**특정활동(4개월)**」

b) 「단기체류(90일)」 등으로 체류하시는 분 : 「**단기체류(90일)**」

주의1) 현재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.

주의2) 이번에 한해 귀국곤란을 이유로 체류를 허가합니다. 이번에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귀국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의3) 상기 허가에 관한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, **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.**

③ 귀국곤란을 이유로 새로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

2022년 11월 1일까지 현재 보유하는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한해 상기 ②의 「**이번에 한해**」 조치를 허가합니다.

주의) 「특정활동(고용유지지원)」은 최대 1년(※ 「**이번에 한해**」) 허가합니다.

※ 「**이번에 한해**」 허가를 받은 분은 「**확인서**」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특례조치 종료 대상자

	대상자	이전 기준	새로운 기준
1	전 기능실습생	특정활동(6개월, 귀국곤란, 취업 가능)	특정활동(4개월, 귀국곤란, 취업 가능)
2	전 유학생	특정활동(6개월, 귀국곤란, 주 28시간 이내 취업 가능)	특정활동(4개월, 귀국곤란, 주 28시간 이내 취업 가능)
3	전 중장기체류자	특정활동(6개월, 귀국곤란, 취업 불가) (※)	특정활동(4개월, 귀국곤란, 취업 불가) (※)
4	단기체류자	단기체류(90일, 귀국곤란, 취업 불가) (※)	단기체류(90일, 귀국곤란, 취업 불가) (※)
5	고용유지지원대상자	특정활동(최대 1년, 고용유지지원, 취업 가능)	특정활동(최대 1년, 고용유지지원, 취업 가능) 주의) 갱신시에는 4개월
6	인턴십 (고시 9호) 제조업 외국종업원 (고시 42호)	특정활동(6개월, 귀국곤란, 취업 가능)	특정활동(4개월, 귀국곤란, 취업 가능)
7	전 외국인 가사 지원 인 재	특정활동(6개월, 귀국곤란, 취업 불가) (※)	특정활동(4개월, 귀국곤란, 취업 불가) (※)

※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로 취업 가능